

2024

02

2024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¹⁾

1 필요성 및 목적

-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고 있으나,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특화된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함.
 -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령별 보호 기준, 삭제권 보장, 세어런딩 규제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미흡함. 특히,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요구됨.
- ▶ 미국(COPPA), EU(GDPR), 영국, 프랑스 사례는 각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진적인 접근법을 보여 주며, 우리나라 정책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COPPA는 아동 대상 온라인 서비스의 부모 동의 의무화와 엄격한 제재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고 있으며, GDPR은 삭제권과 데이터 보호 평가 등을 통해 아동 권리 보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최근 잊힐 권리, 세어런딩 규제, 아동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임. 이들 사례는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보호 체계 구축, 연령별 맞춤형 정책 마련,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우리나라에 제기하며,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

2 미국

- ▶ 미국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이하 COPPA)을 통해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COPPA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 COPPA는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와 웹사이트를 규제함.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와 쿠키와 같은 영구 식별자가 포함됨.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콘텐츠를 포함한 혼합 유저 서비스에도 적용됨.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판단 기준은 사이트의 주제, 콘텐츠의 성격, 아동 모델 활용 여부, 아동 대상 광고 등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혼합 유저 서비스의 경우,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COPPA 준수를 요구함.

1) 본고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도 기본과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김아름, 도남희, 이혜민, 양성은, 2023)」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됨.

- COPPA는 FTC에서 관할하며, 법률 이행을 위한 'COPPA Rule'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2019년 틱톡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여 57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같은 해, 유튜브는 아동 채널 시청자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1억 7천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 주요 준수 사항에는 ① 명확한 개인정보보호정책 게시, ② 부모 동의 획득 및 동의 절차 명시, ③ 아동 개인정보의 삭제 및 접근 권한 제공, ④ 제3자 정보 제공 제한, ⑤ 추가 수집에 대한 제한 기회 제공, ⑥ 정보의 기밀성, 보안성, 무결성 유지 등임.

▶ **캘리포니아주법: Privacy Rights for California Minors in the Digital World**

- 캘리포니아주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Chapter 22.1)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한 고지를 포함해야 함.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광고를 개인화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를 타겟팅하는 프로파일링이 금지됨. 이는 광고 타겟팅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미성년자가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삭제 요청은 미성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제공업체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다만, ① 법적 의무에 따라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② 제3자가 콘텐츠를 복사·게시하여 제공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③ 콘텐츠가 이미 익명화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삭제 요청이 제한될 수 있음.

3 유럽연합(EU)

- ▶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음. GDPR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함(EU GDPR 홈페이지).

▶ **GDPR의 주요 내용**

- GDPR 제8조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함. 각 회원국은 국내법으로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3세까지 낮출 수 있음(이화정, 2021). 예를 들어, 독일, 네덜란드 등은 16세, 포르투갈과 덴마크는 13세로 정하고 있음.

- GDPR 제17조는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명시함.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해야 함.
- GDPR은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자(information society service directly offered to a child)에게 부모 동의를 확인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여함. 데이터 보호 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및 데이터 최소화, 투명성 원칙 등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적용함.
- 제12조에 따라 데이터 관리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권리를 설명해야 함.

▶ GDPR 위반사례

- GDPR 시행 이후 각국 감독 기관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결정을 내렸음. 주요 사례는 <표 1>과 같음.
- GDPR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

동의, 삭제권, 데이터 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잊힐 권리와 투명성 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데이터 처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함. 이러한 점에서 GDPR은 디지털 시대에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표 1 GDPR 주요 위반 사례

구분	내용
이탈리아	10세 아동이 틱톡에서 질식게임인 블랙아웃 챌린지를 하다가 사망하자 틱톡에 대해 연령이 불확실한 개인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금지할 것을 명령(2021년 1월)
네덜란드	틱톡이 대다수가 16세 미만 아동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영어로만 제공한 것은 GDPR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75만 유로(한화 약 10억원) 과징금 부과(2021년 4월)
아이슬란드	어린이 축구대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려는 한 은행의 계획은 GDPR을 위반한다고 결정. 특히 아동의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2020년 6월)
덴마크	'에픽 부킹'이 아동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광범위하게 게재하고 보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발표하고 사진 삭제 명령(2021년 3월)
스페인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부모 동의 없이 촬영하고 워렛에 공유한 외국어 교실에 3천유로(약 4백만원) 과징금 부과(2021년 3월). 부모가 동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아동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리듬체조 클럽에 5천유로(약 6백80만원) 과징금 부과(2021년 8월)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민감정보(특수학급 학생과 부모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유출하여 디지털 학습 플랫폼으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50만NOK(약6천6백만원) 과징금 부과(2020년 7월)
벨기에	교육위원회가 12세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스쿨 시스템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부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최소화와 투명성 원칙을 위반(괴롭힘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면서 익명성 보장하지 않음)했다고 지적(2020년 6월)
스웨덴	학생 50만 명과 보호자, 교직원의 민감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스톡홀름 교육위원회의 교육관리시스템이 취약한 보안으로 GD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39만2천유로(약 5억3천6백만원) 과징금 부과(2020년 11월)

자료: 이선민, 장여경, 김범연, 오병일, 김상현(2021).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 pp.172-176.

4 영국

- ▶ 영국은 유럽연합의 GDPR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2018, 이하 DPA)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특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ICO는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 이하 AADC)을 제정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

며, GDPR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함.

▶ DPA 및 AADC의 주요 내용

- DPA는 GDPR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함. AADC는 DPA 제123조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 아

등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연령별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GDPR의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를 요구하며, 아동친화적인 설계와 기본 설정을 적용함. 이에 따라 정보 제공 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며, 도표, 만화,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 GDPR상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인 투명성, 공정성, 합법성을 준수하며, 아동에게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반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

▶ 연령별 보호 조치

- AADC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조치를 세분화하여 적용하며, 내용은 <표 2>와 같음.

▶ AADC의 목적과 적용 대상

- 아동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여가 권리 등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 권리를 준수하기 위함이며, 아동의 발달 단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맞춤형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함(나종연 외, 2022).
- 적용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동 접근 가능성이 없음을 문서화된 증거로 입증해야 함.

- ▶ AADC는 GDPR보다 더 구체적으로 연령별 맞춤형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설계 기준을 제시함. 이에 정보 제공 방식을 아동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표 2 AADC 연령별 가이드라인

연령범위	가이드라인 내용
0~5세	- 개인정보보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며, 아동에게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으로 전달 - 개인정보 변경 시 부모나 믿을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고
6~9세	- 만화,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와 권리 개념을 설명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온라인 프라이버시 개념을 전달
10~12세	- 아동의 선택에 따라 글, 비디오, 오디오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변경 시 관련 위험성을 설명
13~15세	- 아동과 부모가 함께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변경 시 안전한 선택을 권장
16~17세	- 성인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나종연, 김지혜, 전윤선, 조은선, 이승은, 이아름 외(2019).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pp.58-60.

5 프랑스

- ▶ 프랑스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법적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프랑스의 주요 사례는 아동의 초상권, 삭제권, 그리고 세어런팅 규제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정재도, 2023).

▶ 개인정보 삭제권(잊힐 권리)

- 프랑스는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미성년자의 디지털상의 삭제권(droit a l'effacement)을 명시하였음(한동훈, 2021). 미성년자 시기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며, 삭제 요청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가능함. 법적 의무 준수, 공익 목적, 과학·통계 연구 등의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 CNI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세어런팅 규제

- 프랑스는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경우 아동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45,000유로(약 6,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20년 도입된 법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이 비디오 플랫폼에서 상업적 활동을 할 경우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공탁 기금에 보

관됨(EUR-lex 홈페이지).

▶ 초상권 및 아동 보호

- 프랑스는 아동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 충돌을 방지하고,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디지털 콘텐츠 생성 시 부모는 자녀의 동의를 구하고, 콘텐츠 제작이 아동의 여가나 학습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칙을 준수해야 함.
- 프랑스는 GDPR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의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특히, 삭제권, 세어런팅 규제, 초상권 보호 등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참고하여 법적·정책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시사점

-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미국, EU, 프랑스 등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보호 연령 범위의 확대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은 만 18세 미만, EU의 GDPR은 만 16세 미만, 프랑스도 만 15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음.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호 연령 범위를 만 16세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잊힐 권리의 법제화 필요

- EU의 GDPR과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의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문화하여, 아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권이 있지만, 이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세어런팅 등으로 인한 제3자의 게시물 삭제 요구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연령별 가이드라인 마련

- 영국은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을 통해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설계 표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등의 기본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역량 강화와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 세어런팅 규제 도입 검토

- 프랑스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분별하게 온

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아동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셰어런팅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부모의 인식 제고와 함께, 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함.

▶ 기업의 책임성과 준수 의무 강화

- 미국과 EU는 기업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기업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엄격

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또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해야함.

- 결론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제를 보완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함.

 **참고문헌**

- 김아름·도남희·이혜민·양성은(2023)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나종연·김지혜·전윤선·조은선·이승은·이아름 외(2019).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나종연·최경진·전윤선·조은선·서겸손·장유정·길주현·유정현(202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 정보·유통연구실,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선민·장여경·김법연·오병일·김상현(2021).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한 교육방안과 제도개선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
- 이희정(2021).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고. 국가법연구, 17(2), 157-190.
- 정재도(2023).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의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의 성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12권 제2호. 117-150.
- 한동훈(2021).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홈페이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BPC&division=8.&title=&part=&chapter=22.1.&article= (2023. 7. 1. 인출)
- EU GDPR 홈페이지, <https://gdpr-info.eu> (2023. 6. 13. 인출)
- EUR-lex 홈페이지, Règlement (UE) 2022/2065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9 octobre 2022 relatif à un marché unique d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ant la directive 2000/31/CE (règlement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디지털 서비스 법],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uriserv%3AOJ.L_.2022.277.01.0001.01.FRA&toc=OJ%3AL%3A2022%3A277%3ATOC (2023. 10. 14. 인출).
-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홈페이지,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A Six-Step Compliance Plan for Your Business, <https://www.ftc.gov/business-guidance/resources/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six-step-compliance-plan-your-business> (2023. 11. 5. 인출)
- OECD(2021). Draft Revise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김아름 연구위원 kar22@kicce.re.kr

2024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 www.kicce.re.kr